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I. 복지용구 이용계약

1. 복지용구 상담

(1) 수급자 및 가족등이 사업소를 방문 또는 요청에 의해 방문하여 상담
장기요양급여 인정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확인 (이용가능품목, 적용기간, 현사용품목,기구입품목)

(2) 급여가능여부 조회

해당시점 복지용구 급여확인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장기요양보험 사이트에서
이용가능품목, 현사용품목, 기구입품목 확인

[13.07.01] 추가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분실, 훼손등) 장기요양보험 사이트 확인
(근거 : 복지용구 급여제품 안내 - 2014.10, 20Page. 복지용구 이용절차. 2. 급여가능 여부조회)

※. 건강보험법장애인 보장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재활보조기기의 법령으로 인해 동일제품을
지급받은경우 급여제한됨 (1차 수급자 질문확인, 2차 장기요양보험법 계약입력시 확인)

[15.01.01] 추가

(3) 제품 설명 및 상담내용 기록

1) 내방시에는 진열된 제품과 카달로그를 이용하여 제품설명

2) 방문시에는 카달로그를 이용하여 제품설명

3) 대여제품의 경우 상담내용을 [서식 1. 욕구사정기록지] 의 양식에 의거 작성

[15.01.01] 추가

(4)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관할 지자체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
노인장기요양법 서식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서

[23.01.01] 욕구사정기

2. 복지용구 이용계약

[14.03.01] 신설

(1) 계약목적

사업소(이하 "사업소")와 수급자간 제공된 제품의, 구매(대여)비용, 구매일(대여기간), 상호간 권리와
의무분쟁의 해결기준등을 상호약정함으로서 원활한 복지용구 공급 및 이용을 목적으로함

(2) 계약기간

1) 판매 : 제품 계약일 (판매일)을 기준

2) 대여

a) 최초 대여 : 대여제품 설치일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까지

*수급자(보호자)가 장기요양인정기간을 벗어나는 기한까지 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기간을 벗어날 수 있으며 전제조건은 장기요양인정기간 만기도래시 갱신이
필수조건임을 수급자에게 구두로 충분한 설명을 한 후 수급자(보호자)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함.
다만, 장기요양인정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용중인 대여제품의 대여료는 보험적용이
안된 일반요금으로 부과됨을 설명.

b) 대여 연장 : 최근 계약기간 이후 ~ 장기요양 인정기간까지(또는 계약시작일로부터 1년까지)

c) 급여 변경 : 계약기간중 급여가 변경될경우 계약종료 이전이라도 급여금액 변경일 기준으로
재 계약을 진행하여야함.

급여금액 변경과 관련하여 변경 즉시 잔여계약기간 중 또는 연장계약체결시 변경부분을
적용 계약이 원칙이나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후 본인부담금 수납과 관련한
장기요양급여 변경확인서 또는 영수증으로 급여금액 변동과 관련한 계약을 대신 할 수 있음.[서식.5]

- d) 기초 수급자/의료수급권자 : 입소이용 의료통보 내역 기준으로 계약진행
- e) 이외 수급자가 요청하는 기준일이 있으면 (장기요양 인정기간내) 해당일까지 계약진행
- f) 본인부담금 비율이 변경되는경우 별도 재계약 진행하지 않고 변경비율 수급자 안내후 현 계약서 또는 상담일지, 장기요양제공기록지 내용에 수기기록
 - 기초수급자 ↔ 일반 변경시에는 재계약 진행
 - 급여제품의 급여제공기록지 (매월제공)는 변경된 본인부담금으로 안내
- g) 대여제품 계약시 대여기간중 내구연한 일정 도래시 전,후로 구분하여 계약기간을 산정한다

[18.01.01] 신설

[17.07.01] 신설

(3) (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 1)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 급여비용(수가)에 법정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 한다
 - 일반대상자 (15%), 감경대상자/의료급여 수급권자 (6%, 9%), 기초생활수급권자 : 없음
 - 대여제품의 대여가격은 월단위로 산정하며, 월중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경우 일자별로 산정함
- a) 계약기간중 내구연한에 해당하는 제품은 급여비용(수가)의 50% 적용
- b) 내구연한에 해당하는 제품대여시 별도의 동의서를 받아야 함 [서식.6]
- 2)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간이며, 한도액은 160만원임
- 3) 연간한도액 계산법 : 복지용구급여비용 (공단부담액+본인부담금)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연간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 4) 복지용구 이외의 품목 구매/대여시는 전액을 수급자가 부담함 (기저기, 방수시트, 변기통 추가등)

[18.08.01] 개정

[17.07.01] 신설

[19.01.01] 서식변경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1) 신원인수인(수급자.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제공된 복지용구의 하자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 환불 또는 배상, 계약해지등을진행할수 있다.
- 2) 신원인수인(수급자.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계약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경우 반드시 사전에 사업소에 알려야 한다.
- 3) 수급자가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될수 있다.
- 4) 신원인수인(수급자.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 종료일 이전이라고도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 5) 신원인수인(수급자.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사업소의 동의없이 대여제품의 사양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수없다.
- 6) 신원인수인(수급자.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수급자가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상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 7) 신원인수인(수급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대여제품에 대해 사업소에 A/S, 상태확인을 요청할수 있다.
- 8) 신원인수인(수급자.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보호받을수 있다.
- 9) 신원인수인(수급자. 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대여계약체결전 수급자의 상태와 환경을 거짓없이 알려야하며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과 비용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수급자.보호자 또는 보증인)이 부담한다.

[19.02.17]신설

(5) 계약의 해제

- 1) 수급자는 상기 (4.1)의 근거에 따라 계약해지등을 진행할수 있다.
- 2) 수급자가 변심, 제품 불만족등의 이유로 복지용구 판매제품을 사용하지 않은경우 구입후

30일 이내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단, 제품이 최초 공급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경우)

3) 대여제품의 경우 사용이 불필요한경우 사용계약을 중단할수 있다.

4) 수급자가 대여제품 사용중 시설입소할경우 입소일 전일로 대여를 중지한다.

[23.10.31]변경

단, 단기 입소후 퇴소예정인 경우 퇴소시 사용을 연장한다.

5) 수급자가 대여제품 사용중 중기입원 (15일 이상)의 경우 사업소와

신원인수인(수급자.보호자 또는 보증인)간 상호협의하여 계약 해제여부를 결정한다.

(6) 계약의 갱신 및 연장

1) 대여제품을 사용하는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60일전 유선연락하여 연장 의사문의

[23.01.01]변경

단,상담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대여기간과 관련하여 연장계약의사를 계약기간 만료 60일전이라도
요구할 경우 계약의 갱신 및 연장을 할 수 있음.

2) 사용연장 수급자는 복지용구 공급계약체결.

※ 부득이한 경우 (수급자/보호자) 요청에 의해 계약일자 조정가능

부득이한 경우라 함은 예를 들어 (수급자/보호자)가 계약일자에 해외출국,병원입원등의
계약체결이 불가능할 경우를 일컬음.

II. 복지용구 이용계약 절차

1. 복지용구 사업소 - 수급자

1) 복지용구 공급계약서 : [서식 2]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포함한 사항으로 공급계약서 변경

[16.03.01] 서식변경

[16.05.09] 변경

2) 소독필증 : 대여제품의 경우 신품이 아닌경우 소독필증 1부 보관

수급자에게는 소독완료된 제품임을 안내 및 수급자 요구시 소독필증 열람

3) 급여명세서 : [서식 3]의 급여명세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4) 영수증 : [서식 4]의 영수증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현장에서 납부하지 않고 계좌이체 예정등의 경우도 영수증을 발급하나, 하단에 해당정보기록
수급자에게 안내 후 복지용구공급계약서,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수급자에게 발급하는것으로 영수증을 대신할 수 있음.(본인부담금영수대장 기입)

5)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내에 포함하여 계약

[16.03.01] 변경

6) 내구연한 연장대여기간 이용동의서 : 대여제품이 내구연한 제품인경우 이용동의서 작성 [서식. 5]

[19.01.01] 서식변경

2. 복지용구 사업소

1) 노인장기요양보험사이트 계약 등록 후 공단전송

계약체결 및 제품공급이 이루어진후 공단전송 (변경/연장도 동일적용)

3.복지용구 공급 계약에 관한 예외 규정

1)복지용구 공급 계약 체결시 수급자(보호자)와 직접 면담 및 서명이 원칙이나 아래와 같은 경우

[20.05.01] 추가

수급자(보호자)합의하여 계약관련 유선 동의 및 유선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계약서 작성 후 부분을
SNS로 전송하여 수급자(보호자)가 확인하는것으로 계약서 부분을 교부한것으로 한다.

수급자(보호자) 병원 입원중(추후 퇴원 후 재가 요양 계획), 수급자(보호자) 거주지 이외의 장소에서 거주
수급자(보호자) 인지력저하 및 요양상태 상황으로 수급자 댁 방문을 수급자(보호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보호자)가 타인 접촉시 의심 또는 수급자의 요양 상태의 모습 외부노출 꺼림등)

각종 전염.감염병등의 사유로 사업소에서 수급자(보호자)댁 방문을 수급자(보호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감기 포함)

수급자 독거중인 상태에서 보호자가 수급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소 방문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기록지양식변경